



제416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31호)

2024. 7.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3
(2) 법률안의 구성체계	11
2. 주요 조문별 검토	14
(1) 제1장 총칙(안 제1조~제7조)	14
(2) 제2장 학생인권(안 제8조~제23조)	27
(3)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안 제24조~제36조)	45
(4) 제4장 보칙(안 제37조)	6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창민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0.
3. 회부연월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학생인권은 학교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추구되어 왔음. 그러나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 왔음.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음.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학생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가짐(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 다.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4조).
- 라.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둠(안 제25조).
- 마.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함.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함(안 제30조).
- 바. 학생인권센터는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 등의 연구·개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31조).
- 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조사·처리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고(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¹⁾ 「교육기본법」, ²⁾ 「초·중등교육법」, ³⁾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참여권 등을 명시하고,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와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생 인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학생인권실태조사,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학생인권보장기구의 설치, 학생자치 활성화와 참여기구 설치,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등을 공통으로 명시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보임.

<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에 관한 주요 내용 >

영역	주요 내용
차별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금지 - 학생 안전 조치 등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보장,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 보장, 휴식권 보장
사생활의 자유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개인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등 개인신상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 착용 강제 금지 등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 표현 제한 금지, 교내·외 정치활동 및 집회 참여 제한 금지 등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등

영역	주요 내용
적법한 징계 절차	- 부당한 상·벌점제 제도 운영 제한 - 징계과정에서의 해당 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구제 - 상담, 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등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 오해 넘어 이해로」 (학생인권조례 바로 알기 안내서)

「학생인권 조례」는 2010년대 초반 학생 인권 보호를 제도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2010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고, 광주광역시(2011년), 서울특별시(2012년), 전북특별자치도(2014년), 충청남도(2020년), 제주특별자치도(2021년), 인천광역시(2021년)에서 각각 제정되었는데, 모든 교육활동에서 학생 인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하고, 성별, 종교, 장애, 용모,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으며,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체벌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

시·도교육청	조례 명칭	제정일
경기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010. 10.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11. 10. 2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 1. 2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2013. 7. 12.
충청남도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2020. 7.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2021. 1. 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2021. 4. 12.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육현장의 권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제정 취지와 달리 「학생인권조례」가 본인 외의 다른 학생들,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으로서의 내 권리(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및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최근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폐지⁴⁾하면서 학생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은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의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보장의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이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참여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4) 충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2024.4.24.)하였고,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함과 동시에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의결했음.

제정안의 내용과 체계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 조례」⁵⁾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 「교육기본법」 제5조⁶⁾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제정안의 입법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국민 중 ‘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을 법률로 지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제정안의 방식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특별법의 제정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 추진 시 학생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교규칙과 규범 준수, 교사 및 교직원에게 협조적으로 행동할 의무, 타인을 정중하게 대할 의무 등 교육활동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5)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의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상당 부분의 조문 제목과 내용이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6)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따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학생인권위원회·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 소요는 2025년 8억 300만원, 2029년 16억 2,4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1억 7,100만원(연평균 14억 3,4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하였으므로, 필요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 ~ 2029년 >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제24조)	49.4	-	-	49.4	-	98.8	19.8
위원회의 설치(안 제25조)	42.8	85.6	85.6	85.6	85.6	385.2	77
학생인권센터 설치·운영 (안 제30조)	711	1,450	1,479	1,508	1,538	6,686	1,337
합 계	803.2	1,536	1,565	1,643	1,624	7,171	1,433.8

- 주: 1.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2. 학생인권센터 기능의 조직이 없거나, 조직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우 또는 6급 이하인 교육청 등에 5급 상당의 학생인권옹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3. 학생인권옹호관 지원을 위하여 제정안의 학생인권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교육청에 6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을 각 1명씩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4.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연봉 상·하한액 중간값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보수상승률 및 공무원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전망치 적용 금액을 합산한 결과값임.
 5.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값으로 가정 등이 변동될 경우 결과값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해당 법률안에 열거된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 ‘정당한 교육활동’, ‘부당한 침해’ 등의 용어와 범위에 대한 모호성, 법 문언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법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학생의 인권보장은 교육구성원 간 인권이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장되어야 하는 점과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조례 또는 학교규칙 등으로 학생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학생 인권은 법률적 관점보다는 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권리이므로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존 법령에 제시된 조항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석 차이 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음. 전라남도교육청 역시 보편적 정당한 가치에 해당하는 학생 인권에 대한 내용이 이미 상위법⁷⁾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제화는 불필요하며, 시·도교육청별 지역의 특성과 학생

7)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실정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현실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 인권 보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법률안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고, 그 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은 법률안 제정에 동의하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2)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4개의 장(章), 37개의 본칙,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의 37개 조문은 총칙규정(7개 조문), 실체규정(29개 조문), 보칙(1개 조문)으로 구분되어 있음.

제정안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 조례」⁸⁾와 그 내용과 체계가 유사하게 구성된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중 가장 먼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⁹⁾와의 조문 체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문 체계 >

제정안의 조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본칙	☐ 본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제5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제6조(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	제4조(책무)
제7조(학생의 책임과 의무)	
제2장 학생의 인권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8)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개의 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상당 부분의 조문 제목과 내용이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9) 【참고자료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참조

제정안의 조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절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10조(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1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12조(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13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관리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4조(신체적 자유)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5조(사생활의 자유)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3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제14조(정보 열람 등에 관한 권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제19조(의사 표현의 자유)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9조의2(선거권 등)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7절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3조(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제정안의 조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1절 인권교육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제29조(홍보)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제32조(보호자 교육)
	제2절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제33조(인권실태조사)
제2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제35조(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26조(위원회의 업무)	
제27조(위원회의 구성)	
제2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29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의2(자문기구)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제38조(시민활동 지원)
제3절 학생인권센터	제3절 학생인권센터
제30조(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제40조(검직금지)
제31조(센터의 업무)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제32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42조(사무기구 등)
	제43조(교육지원청별 상담실)
제4절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3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제34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제45조(조사)
제35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제36조(비밀유지의무)	
제4장 보칙	제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47조(수당)
제37조(시행규칙)	제48조(시행규칙)

2. 주요 조문별 검토

(1) 제1장 총칙(안 제1조~제7조)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2. “학원 등”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
3.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학적을 두거나 학원 등에 등록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교육기관 설립자·경영자
 -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 다.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 라. 제1호다목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마. 학원 등에 근무하는 강사, 교습자
 - 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정안 제1조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교육기관”, “학생”, “학생 인권”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1조 목적규정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학생 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타 법률규정 및 협약을 나열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의 목적규정은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 또는 해당 법률의 근거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¹⁰⁾. 동 제정안이 그 예외사유¹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률규정 및 협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예시>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241.

다른 법률 또는 해당 법률의 근거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1)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241.

다만 “○○○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그 목적 규정에 “「○○법」 제○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도 한다. (중략)

또한, 조약·협정·의정서 등 국가 간에 새로 설정된 국제법규 등의 국내에서의 이행을 위하여 입법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법규와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제2조는 “교육기관”, “학원 등”, “학생”, “교직원”, “보호자”, “학생 인권”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우선 제정안은 “교육기관”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됨.

또한 동 제정안은 “학생”을 ‘교육기관에 학적을 두거나 학원 등에 등록한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립자·경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학원 등에 근무하는 강사와 교습자 등을 포괄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학생” 및 “교직원”의 정의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음.

동 정의규정과 관련하여, 교육기관 유형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이 상이함에도 함께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학교교육 외 사적인 교육 영역까지 규율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의 관점에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중 4개 교육청¹²⁾의 조례는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추가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학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청에서 “학생”은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을 넓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소관에 해당하므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와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 및 유치원에 비해 학원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에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이 상이하거나 사회통념상 확립된 의미와 용어 정의가 달라지는 경우 법률의 해석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¹³⁾, “학생” 보다는 “아동·청소년”, “교직원” 보다는 “교육기관 등 종사자”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12)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3) 1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58

한편, 안 제2조제6호는 “학생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문구를 사용한 것임.

다만, 문장의 간결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유사 입법례¹⁴⁾를 참고하여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1조(목적)

- － (교육부) 학생인권은 「대한민국헌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별도 법제화의 필요성이 낮고, 동 제정안과 같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할 경우, 법 적용 및 해석의 혼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저하, 교권침해, 교육현장의 갈등 초래 등이 우려되는바 입법은 신중 검토 필요

1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2조(정의)

－ (교육부) 동 제정안은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유사한 구조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대상을 초·중등학생 뿐만 아니라 ‘학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학생까지 확장하고 인권 실현의 범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동 제정안과 같이 법 적용대상을 확장할 경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입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 구조와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학원’,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 대한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 제정안은 학생의 범주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학원만 다니는 학생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법률안 내용의 대부분은 학교 안의 학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청에서는 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교직원’의 정의에 학원·교습소의 설립·관리자가 포함되지 않아 학원·교습소의 인권 보호 책임자가 불분명함.

따라서, 학생의 정의를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교육기관’과 ‘학원 등’에 적용되는 내용을 별개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안 제3조·제4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3조는 제정안을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제정안이 특별법적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총칙 규정의 마지막 순서에 두는 것이 원칙¹⁵⁾이므로, 조문의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4조는 제정안을 해석·적용할 때에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의 경우 제정안의 적용대상 범위를 고려할 때 교직원에는 학교 외에 유치원과 학원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포함되므로, ‘학교 및’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해석상 명확할 것으로 생각됨.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교육부) 법률 간 우선 적용은 학생이 아닌 다른 국민의 인권과의 관계, 다른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등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15)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3)」, p.51

○ 제4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 (교육부) ‘정당한 교육활동’, ‘부당한 침해’ 등의 법적 개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검토 필요**.
- (충청북도교육청)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필요.

□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등(안 제5조~제7조)

제정안 제5조는 학생인권의 보장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5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교육기관과 학원 내 구체적인 학생인권 보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안 제5조제1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교육·교습 활동에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학생인권’에 대한 정의는 안 제2조제6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안 제5조제1항의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법률은 정확한 해석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단순하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⁶⁾.

16) 25쪽 <예시> 참고

또한, 안 제5조제2항은 ‘교육기관과 학원 내 구체적인 학생인권 보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안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보장원칙’과는 다소 관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 규정을 두어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6조(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지원하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 교육청은 지역 교육기관과 학원 내 실질적인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시·도 조례를 둘 수 있다.

제7조(학생의 책임과 의무) ① 이 법에서 규정된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6조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책무 규정의 주체는 행정법상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정안은 구체적인 권한과 사무의 행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을 주체로 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조항의 내용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외에 교직원 및 보호자 등의 책임과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조 제목은 ‘책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¹⁷⁾ 등을 고려할 때 조 제목을 제6조(교육부장관 등의 책무)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7)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255.

또한, 책무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6조제3항의 규정과 같은 실체적인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의 위임규정과 함께 별도의 조항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¹⁸⁾.

한편, 제정안 제7조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7조의 경우에도 통일성 측면에서 조 제목을 ‘학생의 책무’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7조제1항의 경우 그 내용이 학생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학생인권의 보장원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안 제5조에서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시> 제5조(학생인권의 보장원칙) ①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교습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 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인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또한, 안 제7조의 경우 제정안에 따른 교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최근 공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학생의 권리가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거나 학생의 책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¹⁹⁾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257.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5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 (교육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제1항 ‘학생인권의 모든 교육·교습 활동에 우선적으로 최대한의 보장’ 원칙은 현행 법령과 상충 가능성이 존재함.

또한, 학교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특별히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절대적으로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 등의 용어와 범위에 대한 모호성, 법문언의 불명확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 (충청북도교육청) 상위법인 헌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불필요함. 특히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무조건적으로 학생인권을 보호하도록 해석되어 악용될 여지가 있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칙에서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도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학칙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1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7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 6. (생략)

②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2. 학습자로서 학교의 시설 및 물건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소중히 다루며, 개인 및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학습자로서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 시간을 준수하고 수업 및 기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할 책임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을 이해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
5.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며,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 제6조(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

-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 및 자율성 측면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검토 필요**. 또한, 제정안 제6조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제2항에서는 교직원 및 보호자까지 주체를 확대하고 있는바, 책무의 주체를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 제정안은 학생의 인권 침해 방지 노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학생의 잘못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7조(학생의 책임과 의무)

- (교육부)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 침해뿐만 아니라 교육 당사자 간 인권의 조화와 균형, 학교 규범 준수 의무,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음.

(2) 제2장 학생인권(안 제8조~제23조)

제정안 제2장은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으로,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부터 제7절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로 구분됨.

□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안 제8조)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成績), 거주지역 또는 형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1절은 제8조 한 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8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²⁰⁾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서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위, 성별 정체성, 징계, 성적(成績), 거주지역 또는 형태 등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2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라. (생략)

○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교육부) 제정안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열거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며, 「대한민국헌법」과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학교보건법」 등 교육관련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낮음.

또한, 법문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아울러, 제2항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 책무의 주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학교·학원·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립자·경영자를 추가하여 법 적용 대상과 책무의 주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충청북도교육청) 제정안 제8조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법이 불필요하고, 성적(性的)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문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 필요.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없는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또한, 학생의 ‘정계’는 잘못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여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동 규정에 포함되어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음.

□ 제2절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안 제9조~제11조)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등 학생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휴식공간 등 적절한 시설을 운영하고 필요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생은 차별, 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차별, 폭력,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사이버상의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생은 안전하게 교육받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환경을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2절은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10조(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제11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으로 구성됨.

안 제9조제3항은 학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제2항²¹⁾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 결석에 해당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21) 2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

제8조(출결상황)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표 8에 따라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는 같은 훈령 별표 8²²⁾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해당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출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안 제11조제3의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이 현장실습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실습 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안전 또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22)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지각·조퇴·결과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이 이미 질병으로 인한 결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정안의 ‘불이익’ 문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악용의 우려가 있음.

○ 제10조(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과 같이 ‘체벌’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충청북도교육청)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에는 체벌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체벌’이라는 단어는 교사 또는 보호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체벌’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사의 훈계가 언어폭력으로 해석·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의 훈계가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함.

○ 제11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충청북도교육청) 제3항 현장실습의 경우 교직원이 현장실습 업체와 실습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하거나 현장실습 전후로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야 함.

□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안 제12조·제13조)

제12조(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등 학생의 성장발달단계, 장애 등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따른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유발로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사 반하여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2호의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경우에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제정안 제3절은 제12조(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13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로 구성됨.

안 제12조는 학생들이 개별 특수성 및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교육부장관 등이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와 제12조(학습자)²³⁾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23) 23)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학습자)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안 제13조의 경우 학생이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내용임.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예외적으로 학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²⁴⁾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²⁵⁾ 등의 예외사유를 포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자가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의 정의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포함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로서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바²⁶⁾, 보호자가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26)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자녀의 양육은 가족생활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의 하나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인권으로서 위 헌법조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또한 자녀양육은 헌법상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인 동시에 부과된 의무로서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므로, 부모는 양육을 위한 물질적·정신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자녀가 누리는 이익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법익이다. (2016헌마260 결정 참고)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12조(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며, 제정안 제12조제3항의 ‘과도한 학습 강요와 경쟁 유발’은 법문언의 불명확성으로 학원, 학부모, 학생 등이 각기 달리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 (충청북도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과도한 학습’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음.

○ 제13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며, 동 제정안 제1항은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까지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교육활동을 선택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 교육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제정안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학생이 선택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학업중심의 교육활동으로 한정할 경우, 학업 외적인 성장발달, 개별적 여건에 따른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정서적·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선택하기보다는 교원, 학교, 전문가 등이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활동 및 참여범위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임.

- (충청북도교육청)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과업 부여 등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안 제14조~제17조)

제14조(신체적 자유)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및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成績), 학습정보,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性的)지향 등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 복지,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의 목적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개인정보의 오류로 인한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정안 제4절은 제14조(신체적자유), 제15조(사생활의 자유),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각각 학생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자유와 사생활 및 비밀에 관한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의 제2항이 보호자가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용모를 규제할 수 없고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14조의 경우 교육부장관 등이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복 착용 등에 관한 사항도 학칙으로 정할 수 없게 되므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안 제16조는 학생의 개인정보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7조의 경우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기록 등의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 및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이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 제17조의 규정과 충돌이 예상되는바,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함.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14조(신체적 자유)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며, 복장 등은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과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규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별로 복장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교복 자율화 등으로 인한 문제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이 학생의 용모 및 복장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위학교가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목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제15조(사생활의 자유)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며,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 검사 등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 검증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규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제16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적용됨. 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되는 특별한 규정으로 적용될 경우, 제정안 제16조에 따라 열거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본 제정안으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 제17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정안 제16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생활기록에 대한 무분별한 정정 요구가 우려됨.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안 제18조·제19조)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등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 등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정안 제5절은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와 제19조(의사 표현의 자유)로 구성됨.

안 제18조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제2항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23년 8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문 작성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3조(훈계)²⁷⁾는 반성문 작성 대신 “성

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3조(훈계)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찰하는 글쓰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고시에 따른 “성찰하는 글쓰기”가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반성, 서약 등 진술’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안 제19조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 경우에도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충청북도교육청) 제2항의 경우 반성, 서약 등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교육활동의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제19조(의사 표현의 자유)

- (교육부) 제정안 제8조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같이 의사 “표현의 자유”의 권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판단이 쉽지 않은 제약이 존재하므로, 학교규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3조의 표현에 대한 자유권 정의 :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 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다양한 수단’이라는 용어가 모호함.

□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안 제20조~제22조)

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학생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6절은 자치 및 참여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로 구성됨.

제정안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치활동의 권리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7조²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²⁹⁾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상황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³⁰⁾.

28)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21조는 학생이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으로, 특히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제3항과 같이 학교 규칙 제·개정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할 경우 규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혼란 발생이 우려되는바, 문구를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22조는 학생이 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 역시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20조(자치활동의 권리)

- (교육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간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조직 임원 구성 과정에서 성적, 징계, 사상 등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및 활동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제21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교육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간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0) 참고로, 유사한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079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단위학교별 상황이 다양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별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교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 의견 반영을 의무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제22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교육부) ‘교육기관의 운영’,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존재함.
참고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서는 참여의 권리를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으로 제한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7절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안 제23조)

제23조(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③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징계절차 및 징계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여부 확인,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정안 제7절은 제23조(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한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23조는 학생이 정당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제1항과 제3항의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징계절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2항은 교육부장관 등이 징계와 그 전후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 또는 교권 침해 사안에서는 피해 학생 및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가해학생의 선도 필요성 간에서 적절한 수준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복귀를 목표로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23조(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 (교육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적정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 간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 제1항의 ‘인권의 기준’ 용어가 모호하고, 제3항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및 행정심판을 통하여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어 타 법령과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함.

(3)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안 제24조~제36조)

제정안 제3장은 제1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 제3절 학생인권센터, 제4절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절 학생인권종합계획(안 제24조)

제2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교육기관의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시행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6. 정부기관 및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정안 제24조는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 증진 등을 위하여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2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 － (교육부) 안 제24조부터 안 제35조에 따른 인권종합계획의 수립,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인권증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특성 및 자율성 측면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신중검토 필요**.

해당 사항을 법률에 의무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현행처럼 시도교육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 및 교육 규칙을 제정하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기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정안 제24조제2항제4호가 규정하는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안 제25조~제29조)

제25조(위원회의 설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기관의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에는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도 교육청에는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따라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이하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3.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개선 권고
4. 학생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5. 학생인권과 관련된 기관과의 교류·협력
6. 학생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7.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시·도 교육청에서 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3. 국회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3인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3인
- ④ 교육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는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2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교육부장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29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3장제2절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위원회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제정안이 설치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위원회는 안 제26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심의·자문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개선 권고, 학생인권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라고 판단됨.

「정부조직법」 제5조³¹⁾는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제5조³²⁾는 이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에 따른 학생인권위원회의 경우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부 소속 행정위원회로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

31)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3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으며, 그 외에 타 부처 소속 위원회로는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소속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인권위원회의 업무가 타 행정위원회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존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여 독자성이 인정되는 성격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학생인권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학생인권위원회의 성격과 역할,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안 제27조제3항은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을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국회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3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원 선임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위원의 추천인을 구분한 입법례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대표적임. 그러나,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야 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로 구분하여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추천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9개 부처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입법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선임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 근거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한편, 제정안의 경우 교육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가 각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 집단이 상호 견제·균형의 관계에 있거나 상이한 가치를 표방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각 집단이 보유하는 전문지식 및 경험이 교육분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은 위원 선임 절차를 둘 필요성에 관하여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 외에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27조제2항 제1호의 ‘교육전문직’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명확히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원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위원 정수인 11인과 같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방식보다는 ‘위원은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간략히 규정하는 것이 해석에 용이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25조에서 시·도 교육청에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정안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안 제29조에서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취지의 위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25조(위원회의 설치)

- (교육부) 제24조의 검토의견과 동일하며, 학생인권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 인권의 조화와 균형, 학교규칙의 준수 의무와 학생인권 보장 등이 균형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만큼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두는 ‘학생인권위원회’는 별도 위원회 신설보다는 교육부 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인권만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면 학교에 있는 다른 주체들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기관에 소속된 주체들의 의사와 무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강제할 우려가 있음.

○ 제26조(위원회의 업무)

- (교육부), (행정안전부) 제25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충청북도교육청) 제25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위원회의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해석으로 일관할 수 있고, 학생인권교육센터 내 의견과 위원회 의견이 상반될 경우 지침 제시 및 권고 과정에서 많은 이견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4호의 규정은 삭제 필요

○ 제27조(위원회의 구성)

- (교육부), (행정안전부) 제25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충청북도교육청) 제2항제5호의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져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삭제 필요

○ 제28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교육부), (행정안전부) 제25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제29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교육부), (행정안전부) 제25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제3절 학생인권센터(안 제30조~제32조)

제30조(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시·도 교육청에서 교사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31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3.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4.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5.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7.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8.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9. 위원회·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그 밖에 학생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3장제3절은 학생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제30조(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센터의 업무), 제32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으로 구성됨.

제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센터는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되며, 센터의 장은 안 제30조제3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이 됨. 센터는 안 제31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정안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 관련 조례에 따라 유사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모든 시·도교육청에 두도록 하여 학생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학생인권 지원기구 현황>

구 분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옹호관	사무기구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	민주인권교육센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	학생인권교육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인권보호관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 없음)	-	교육인권경영센터
울산광역시(학생인권조례 없음)	-	학생인권지원센터

한편, 동 제정안의 경우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과 업무,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은바, 법률에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명확한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현재 시행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³³⁾ 등이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테러인권보호관 등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술인보호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2.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30조(학생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교육부) 학생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법률로 획일적으로 정하여 강제하기 보다는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시·도의 조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의 인권만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직원을 두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 어긋나므로, ‘교육인권센터’, ‘교육인권옹호관’으로 개편할 필요.

○ 제31조(센터의 업무)

- (교육부) 제30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제32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 (교육부) 제30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제4절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안 제33조~제36조)

제33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34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33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피해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청, 학교 및 학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학원 등의 설립자·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항의 조치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권고를 공표할 수 있다.

제36조(비밀유지의무) 이 법에 따라 학생인권 보호 및 구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학생인권침해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 제3장제4절은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에 관한 내용임. 안 제33조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제정안에 따르면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피해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 등에는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음. 아울러, 제정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에 대한 자료요청, 질의, 현장방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합의 또는 구제를 위한 징계 등의 권고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31조(센터의 업무)가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호)과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제6호) 등을 학생인권센터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역할의 중복이 우려됨. 제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센터의 장이 학생인권옹호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에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제정안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과도하여 교육활동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할 때 교육현장의 충분히 수렴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 제33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 (교육부) 제30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충청북도교육청) 제정안 제1항의 ‘누구든지’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활동과 무관한 제3자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가 우려됨.
제2항 각 호에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나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정안은 구제 신청의 미수리를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생인권옹호관의 행정재량권이 제한되지 않아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이 우려됨.

○ 제34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 (교육부) 제30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피해당사자의 의견 없이 자의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자료요청·질의 등으로 관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학교에 업무 이외의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독립성 보장이 과도하여 교육청 감사·징계관련 부서가 무력화될 수 있고, 학생의 권리 침해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판단 기준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제35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 (교육부) 제30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0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제36조(비밀유지의무)

- (교육부) 제30조의 검토의견과 동일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안 제35조제6항에 따라 조치결과 및 권고내용을 공표할 권한이 있고, 이를 활용하여 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정책적인 성격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

(4) 제4장 보칙(안 제37조)

□ 시행규칙(안 제37조)

제37조(시행규칙)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정안 제4장은 보칙에 해당하고, 제37조(시행규칙) 한 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안 제3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례와 교육규칙은 시행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 제목을 제37조(위임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6